교원해외연수에관한규정

제정 1999.10.01.
개정 2013.12.06.
개정 2018.11.21.
개정 2020.04.09.
개정 2023.03.16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수원여자대학교(이하 "본 대학"이라 한다) 교원의 해외연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3.12.6.>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

1. "교원"이라 함은 전임교원(계약제 전임교원을 제외한다)을 말한다. <개정 2018.11.21.>
2. "해외연수"라 함은 학술연구, 교환교수, 기술훈련, 연구시찰, 학술발표, 공연 또는 전시, 국제회의 등 대학발전과 관련하여 공무 및 공무 외 연수에 참가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18.11.21.>
3. "공무 해외연수"라 함은 공무수행 및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18.11.21.>
4. "공무 외 해외연수"라 함은 국제학술회의에서 논문발표(포스터 발표를 포함한다) 토론 또는 공연전시, 기타 연구 활동으로 본인이 참여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18.11.21.>

제3조(구분) 해외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연수기간에 따라 <개정 2018.11.21.>
가. 장기해외연수는 2개월 이상 해외연수의 경우 <개정 2018.11.21.>
나. 단기해외연수는 2개월 미만 해외연수의 경우 <개정 2018.11.21.>
2. 연수목적에 따라 <개정 2018.11.21.>
가. 공무 해외연수 <개정 2018.11.21.>
나. 공무 외 해외연수 <개정 2018.11.21.>

제4조(신청자격) ① 해외연수를 신청하고자 하는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

1. 본 대학 교원으로 신규 임용일 및 휴직에서 복귀한 날로부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자. 단, 국제학술대회에서 논문발표(포스터 발표를 포함한다) 및 공연 또는 전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<개정 2018.11.21.>
2. 관련 법령에 따라 해외연수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<개정 2018.11.21.>
3. 연구 및 학생지도에 충실하고 본 대학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자 <개정 2018.11.21.>
4. 국가 또는 본 대학의 명예를 손상시킨 사실이 없는 자
5. 강의 및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
6.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자
7. <삭제 2018.10.00.>

② 제1항의 자격을 충족하지 않는 교원인 경우에도 총장이 학교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 <개정 2009.3.1., 2018.11.21.>

제5조(선발기준) ① 해외연수자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8.11.21.>

1. 논문 또는 연구 과제를 위하여 자료수집의 필요가 있는 자 <개정 2018.11.21.>

2. <삭제 2018.11.21.>
3. 외국인과 공동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
4. 학사업무를 위한 자료수집이 필요한 자
5. 보직업무를 마친 후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자
6. 국제기구 또는 학술기관에 파견근무를 하고자 하는 자

② 제1항의 연수목적에 따른 명확한, 기준 또는 파견기관(또는 비용부담 기관)이 명시된 기준이 없거나 기준에 부합하는 교원이 경합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순차로 적용하여 선정 또는 추천한다. <개정 2018.11.21.>

1. 최근의 보직 수행기간이 긴 순 <개정 2018.11.21.>
2. 본 대학에서 재직기간이 긴 순 <개정 2018.11.21.>
3. 연구실적 및 연수국의 어학능력이 우수한 순 <개정 2018.11.21.>
4. 과거 6개월 이상의 해외연수의 횟수가 적은 순 <개정 2018.11.21.>

제6조(연수기간) ① 장기해외연수는 학기 초에 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단기해외연수는 하계 및 동계 방학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학기 중이라도 일본 및 동남아 지역은 1주일 이내, 그리고 기타 지역은 10일 이내로 연간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. <개정 2018.11.21.>

제7조(**해외연수심사**)<개정 2018.11.21.> 연구심의위원회가 해외연수심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역할을 수행하며,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신청내용의 적격여부 <개정 2018.11.21.>
2. <삭제 2018.11.21.>
3. 해외연수 적합자 선정 <개정 2009.3.1., 2018.11.21.>
4. 해외연수 경비의 책정
5. 기타 해외연수 관련 사항 <개정 2018.11.21.>

제8조(신청절차) 장기·단기 해외연수의 신청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청, 심의, 승인 단계로 구분한다. <개정 2018.11.21.>

1. 신청 : 해외연수를 하고자 하는 교원은 해외연수허가신청서를 다음 각 목의 신청서류와 함께 소속 학과장과 학부장을 경유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한다. <개정 2018.11.21., 개정 2020.04.09>

가. 해외연수허가신청서 1부
나. 초청장 및 프로그램 (원본 및 번역문) 각 1부
다. <삭제 2018.11.21.>
라. 보강계획서 1부 : 단기해외연수 교원에 한함(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) <개정 2018.11.21.>
마. 소속 학과의 동의서(별지 제1호서식) 1부 : 장기해외연수자에 한함 <개정 2018.11.21.>
바. 장기해외연수 계획서(별지 제2호서식) : 1부 <개정 2018.11.21.>

2. 심의 : 제7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친다. <개정 2018.11.21.>
3. 승인 : 해외연수 교원은 총장의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.<개정 2009.3.1., 2018.11.21.>

제9조(신청기한) 해외연수를 희망하는 교원은 제6조에 따라 장기해외연수의 경우 연수개시 6월 전까지, 단기해외연수의 경우 연수개시 2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

2018.11.21.>

제10조(해외연수의 제한)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연수를 제한할 수 있다. <개정 2018.11.21.>

1. 소속 학과나 행정부서에서 학사운영에 지장이 있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<개정 2018.11.21.>
2. 연 1회를 초과하여 해외연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
3. 동일한 학과의 재적인원 1/2을 초과하여 동시에 해외연수를 신청할 수 없다. (단, 방학중에는 예외로 한다). <개정 2018.11.21.>
4. 연구년 또는 장기해외연수를 수행하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

② 제1항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총장의 결재를 득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. <개정 2009.3.1., 2018.11.21.>

제11조(연수비의 지원) 연수비는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09.3.1., 2018.11.21.>

제12조(연수자의 의무) ① 6월 이상을 요하는 장기해외연수자는 매 6월마다 활동내용을 장기해외연수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해외연수가 종료된 후 1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3.1.>

② 단기해외연수자는 귀국 후 15일 이내에 해외연수도착보고서를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3.1., 2018.11.21.>

③ 장기해외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교원은 귀국 후 그 연수기간의 3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본 대학에서 재직 하여야 하며, 이 의무를 완수하기 전에 사임하는 경우에는 연수기간 중에 지급된 급여의 전액과 제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11.21.>

제13조(연수의 취소) 해외연수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총장은 연수허가를 취소하고 귀국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, 연수기간 중에 지급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고 본 대학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를 회부할 수 있다. <개정 2009.3.1., 2018.11.21.>

1. 연수기간 중 국가 또는 본 대학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
2. 법령 및 이 규정에 의한 지시를 위배하였을 경우
3. 연수기간이 만료되어도 귀국 및 귀교하지 않았을 경우
4. 이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직원의 휴직기간이 경과하여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복직하지 않거나 총장의 소환에 불응하였을 경우 <개정 2009.3.1.>
5. 연수기간 중 연수목적과 위배되는 활동을 하였을 경우

제14조(연수기간의 연장) ① 해외연수의 기간연장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장기해외연수의 경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연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60일 전에 상세한 사유서와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연수 기간연장사유서를 제출한다. <개정 2009.3.1., 2018.11.21.>

1. 기간연장사유서 및 계획서(별지 제3호 서식) 1부 <개정 2018.11.21.>
2. 연구실적물
3. 관련 외국 기관장의 추천서 1부
4. 연장신청서약서(별지 제4호 서식) 1부 <개정 2018.11.21.>
5. 본 대학 소속 학과의 동의서(별지 제3호 서식) 1부 <개정 2018. 11. 21, 2023. 3. 16.>
6. <삭제 2018.11.21.>

② 신청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.<개정 2018.11.21.>

③ 연수기간 연장신청이 총장에 의하여 허가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연수자는 해당 연수기간만료 전에 귀국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3.1., 2018.11.21.>

제15조(세부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09.3.1., 2018.11.21.>

제16조(관리부서) 교원의 해외연수에 관한 신청접수 및 보고서 관리는 해외연수 담당부서에서 수행한다. <개정 2007.5.9., 2018.11.21., 2020.04.09>

제17조(문서보관) 이 규정과 관련한 문서의 보존연한은 3년으로 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【별지 제1호서식】<개정 2018.11.21.>

해외연수 허가 동의서(소속학과)

소속	
교수명	
직급	
연수기간	
체류지국	
연수목적	

상기 교원의 해외연수 허가를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학과 교수 (서 명)
학과 교수 (서 명)
학과 교수 (서 명)
학과 교수 (서 명)
학과 교수 (서 명)
학과 교수 (서 명)
학과장 (서 명)
학부장 (서 명)

【별지 제2호서식】<개정 2018.11.21.>

장기해외연수 계획서

소속	
교수명	(서명)
직급	
연수기간	
체류지국	
연수 계획서	
월별	**연수내용**
00월	
00월	
00월	
00월	
00월	
00월	

【별지 제3호서식】<개정 2018.11.21.>

기간연장 사유서 및 계획서

소속	
교수명	(서명)
직급	
연수기간	
체류지국	
연수목적	
연수내용	
연장 희망기간	
기간 연장 사유	
기간 연장 계획	

00월	
00월	
00월	
00월	
00월	
00월	

【별지 제4호서식】<개정 2018.11.21.>

연장신청 서약서

소속	
교수명	
직급	
연수기간	
체류지국	
연수목적	

1. 준수사항
   가. 국내외 법의 준수
   나. 교원연구 규칙의 준수
      1) 연구 및 연수기간 엄수
      2) 연구 및 연구계획 변경금지
      3) 각종 보고 이행
   다. 귀국 후 복무이행

2. 감수사항
   가. 변사의 무
      1) 연구기간 중 지급된 제급여 (해당자에 한함)
      2) 연구기간 중 지급된 장학금 및 이에 따른 경비일체 (해당자에 한함)
   나. 본 대학 교원으로서의 교원의 품의를 손상시켰을 때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함

상기 본인은 해외연수를 신청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준수사항의 이행은 물론 이의 위반으로 인한 인사 및 재정상의 손실에 대하여 변상할 것을 서약합니다.

년 월 일

(서 명)